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숭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474

발의연월일: 2025. 1. 13.

발 의 자:백승아·장철민·진선미

이병진・최기상・강경숙

김남희 • 문정복 • 김문수

박은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소녀상에 대한 첫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전국 소녀상은 154개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 되었 으나 현장점검, 설립단체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아 실태조사에 오류가 있으며 해외 소녀상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 어지고 있음.

또한,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위기에 처해있고 국내 소녀상에 철거마스크를 씌우거나 비닐봉지로 가리는 등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수사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등에 대하여 실 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,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 는 조형물등을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하도록 하며, 위안부피 해자추모상징물이 고의로 손상 또는 파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 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). 법률 제 호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지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0조의2(실태조사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내 및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 (이하 "조형물등"이라 한다)에 대한 보존·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조형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·내용·방법과 목록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3(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지정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

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조형물등에 대하여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상징물(이하 "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 물"이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이 고의로 손상 또는 파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조(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제6조(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) ①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) ① 다 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 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 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 를 둔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3.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안 부피해자추모상징물 지정 4. •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 3. • 4. (생 략) 와 같음) 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10조의2(실태조사 등) ① 여성 가족부장관은 국내 및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 물 또는 상징물(이하 "조형물 등"이라 한다)에 대한 보존・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조형물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

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

<신 설>

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에 협 조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·내용·방법과 목록의 작 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의3(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 물 지정 등) ① 여성가족부장 관은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조형물등 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를 추모하는 상징물(이하 "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"이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안부피 해자추모상징물이 고의로 손상 또는 파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・방법・절차 등에 필요한 사
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